

-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 -  
**검 토 보 고**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이창섭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1293호

다. 제출일자 : 2016. 6. 28

라. 회부일자 : 2016. 6. 30

## 2. 주 문

-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“자전거”가 아닌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용여건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교통수단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기술 장려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

## 3. 제안이유

- 현재 전기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새로운 도심 이동수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자전거도로 통행권 논란과 같은 제도적 기준이 미흡하여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

-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“자전거”가 아닌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용여건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

따라서,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교통수단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기술 장려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함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
나. 기타사항: 없음

다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) : 원안 동의

#### 5. 이 송 처

가. 국 회 : 국회의장

나. 정 부 : 국무총리, 행정자치부 장관, 경찰청장

## 6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### 가. 개 요

- 동 건의안은 관련 법상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이용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고자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『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』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2015년 기준으로 전기자전거의 세계 판매량이 약 4천만대에 달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 시장은 확대 추세에 있고, 국내에서도 전기자전거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 1만7천대 이상 판매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

※ 참고 : 최근 5년간 국내·세계시장 전기자전거 판매 실적<sup>1)</sup>

(단위 :대)

| 구분   | 2011       | 2012       | 2013       | 2014       | 2015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국내시장 | 5000       | 8000       | 11,000     | 13,000     | 17,000     |
| 세계시장 | 32,890,000 | 31,100,000 | 34,110,000 | 37,050,000 | 40,070,000 |

- 전기자전거의 보급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『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』에서는 자전거를 “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”로 정의함에<sup>2)</sup> 따라 원동기장치를 부착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고,

1) 최영진·이부혁, 규제에 묶인 전기자전거 자전거 타는 데 웬 오토바이 면허?, 중앙일보, 2016.4.2

2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전거”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(驅動裝置)와 조향장치(操向裝置) 및 제동장치(制動裝置)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.

『도로교통법』에서는 자전거도로를<sup>3)</sup> “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”로 규정함에 따라<sup>4)</sup>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임

또한 전기자전거는 『도로교통법』상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에 해당되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이 실제 전기자전거 이용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있음

- 이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도시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를 속도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보행자나 자전거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<sup>5)</sup>

※ 참고 : 국가별 전기자전거 운영 비교<sup>6)</sup>

| 국가   |       | 운영 측면       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|
|      |       | 면허           | 자전거도로 통행 | 등록 | 나이 | 헬멧       |
| 유럽연합 | 연합법   | 소속 국가 규정에 따름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
|      | 영국    | ×            | -        | ×  | 14 | -        |
| 아시아  | 일본    | ×            | ○        | -  | -  | ×        |
|      | 중국    | ×            | ○        | -  | -  | ×        |
|      | 인도    | ×            | -        | ×  | -  | -        |
| 미국   | 연방법   | 각 주 규정에 따름  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
|      | 워싱턴   | ×            | ○        | -  | 16 | 자전거 규정준용 |
|      | 캘리포니아 | ×            | -        | ×  | 16 | ○        |
|      | 일리노이  | ×            | ○        | -  | 16 | ×        |
| 캐나다  | 연방법   | 각 주 규정에 따름  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
|      | 온타리오  | -            | 지자체 규정   | -  | 16 | ○        |
|      | 앨버타   | ×            | -        | ×  | 12 | ○        |

3) 자전거도로에는 “자전거 전용도로,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, 자전거 전용차로, 자전거 우선도로”가 있음  
 4) 제2조(정의) 8. “자전거도로”란 안전표지,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.  
 5) 지우석, 『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, 제도적 대응은 미흡』 (경기개발연구원, 2016.5.18.)  
 6) 신희철·김동준·정성엽, 전기자전거 법·제도 개선방안 연구, KOTI-Brief, 2012.4.13

- 따라서, 동 건의안은 기술발달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전거 실제 이용여건을 반영할 수 있고,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서 관련 산업 발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전기자전거가 원동기 장치에 의해 작동할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고,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자전거와의 사고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 규정마련 등 안전운행 관련 규정도 같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임<sup>7)</sup>
- 한편 서울시장은 동 건의안에 대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운행에 대한 개선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<sup>8)</sup>

---

7) 동 건의안에 대해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(회장 한만정)에서 전기자전거의 안전을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(2016.8.16.)

8) 자전거정책과-2424(2016.9.1.)